

행정사무감사계획

(운영위원회)

1. 감사의 목적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, 제17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 함으로서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, 필요한 각종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'97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

1996. 11. 26. (화) ~ 12. 2(월) (7일간)

3. 감사실시대상 및 사무

가. 대상기관 :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 해당기관

○ 구의회사무국

나. 사무의범위 : 구의회사무국

4. 감사반의 편성

○ 감사총괄 : 운영위원회 위원장

(가나다순)

위원장	간사	감사위원	전문위원	직원
배기한	김충웅	김동철, 문종준, 손병욱, 손영상 심용진, 전병운, 조용호	허영훈	사무국 직원 2 속기사1

5.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

일시	감사장소	감사대상	비고
'96. 11. 26 ~ 12. 2	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	영등포구의회 사무국	필요시 현장 확인 * 감사일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수 있음

6. 감사요령

대 상	감 사 방 법	주 요 감 사 착 안 사 항	비 고
구 의 회 사 무 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황보고 청취 ○ 질의 및 답변 ○ 서류 및 현지확인 (필요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회의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 및 종합 조정 ○ 회의의 방청 및 참관 ○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○ 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○ 의회소관재무, 회계에 관한 사항 ○ 의회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총괄 ○ 청원의 접수, 이송 및 처리 결과통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출석관계 공무원 - 소관국장및 관계공무원

7. 감사진행순서

- 감사실서 선언 - 위원장(감사반장)
- 위원장 인사
 - 적극적인 감사당부 및 성실한 수감자세 강조
 -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
- 선서
- 국장인사 - 간부소개
- 현황보고 - 감사대장 사무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
- 질의, 답변 - 개별 및 일문일답식 감사
- 서류 및 현장확인 - 관계인 출석, 증언, 의견청취
- 감사결과 강평
- 감사종료

8.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

가. 감사대상기관에서는 다음 자료를 감사시 제출하여야 한다.

- 1996년도 업무계획서
- 1996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비예산사업의 추진실적
- 1996년도 3,000만원이상 공사의 추진실적
- 1996년도 각급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
- 1996년도 각종 민원(진정·청원·기타) 접수처리부
-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

나. 제출부수 : 15부

다. 감사요구자료

-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'96. 1월 이후의 것을 작성
- 각 위원회별로 간사가 취합하여 위원장에 보고

라. 제출처 : 운영위원장

9.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

가. 일일보고

- 감사직후 간사는 각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보고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

나.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 본회의상정의결